

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[광진구 구의동 50-1호 일대]

의 안 번 호	1355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8월 12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[광진구 구의동 50-1호 일대]

- 용도지역 변경 : 제1종일반주거지역 →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

2. 입안내용

-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조서(안)

대상지 위치	구 분	면 적(m^2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광진구 구의동 50-1호 일대	계	844.6	-	844.6	
	제1종일반주거지역	844.6	감) 844.6	-	
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 이하)	-	증) 844.6	844.6	

3. 입안사유

- 구의동 50-1호 등 4필지는 2003년 일반주거지역 중세분화 당시 착오로 공원으로 분류,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을 서울시 중세분 기준에 맞게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으로 결정(변경)하고자 하는 사항임.

4. 도시관리계획사항

- 제1종일반주거지역

5.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

- 주민 의견청취 사항 : 별도 의견 없음
 - 공람기간 : 2015.7.14 ~ 7.28 (15일간)
- 구의회 의견청취 사항 : 별도 의견 없음
 - 구의회 의견청취 : 2016.2.22(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)

6. 관련부서 검토의견

구분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(자치구)
도시 계획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지가 주변(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 이하))과 다른 섬형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명 필요. - 광진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입안('03년) 시 해당 지역이 공원부지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사유 - 관내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실시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세분 당시('03년) 해당 지역이 공원 부지로 분류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된 것은 오류로 판단됨. ○ 종세분화 당시 관내 섬형 제1종일반주거 지역으로 결정된 사례 조사 결과 유사 사례 없음.

7.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결과

- 특이사항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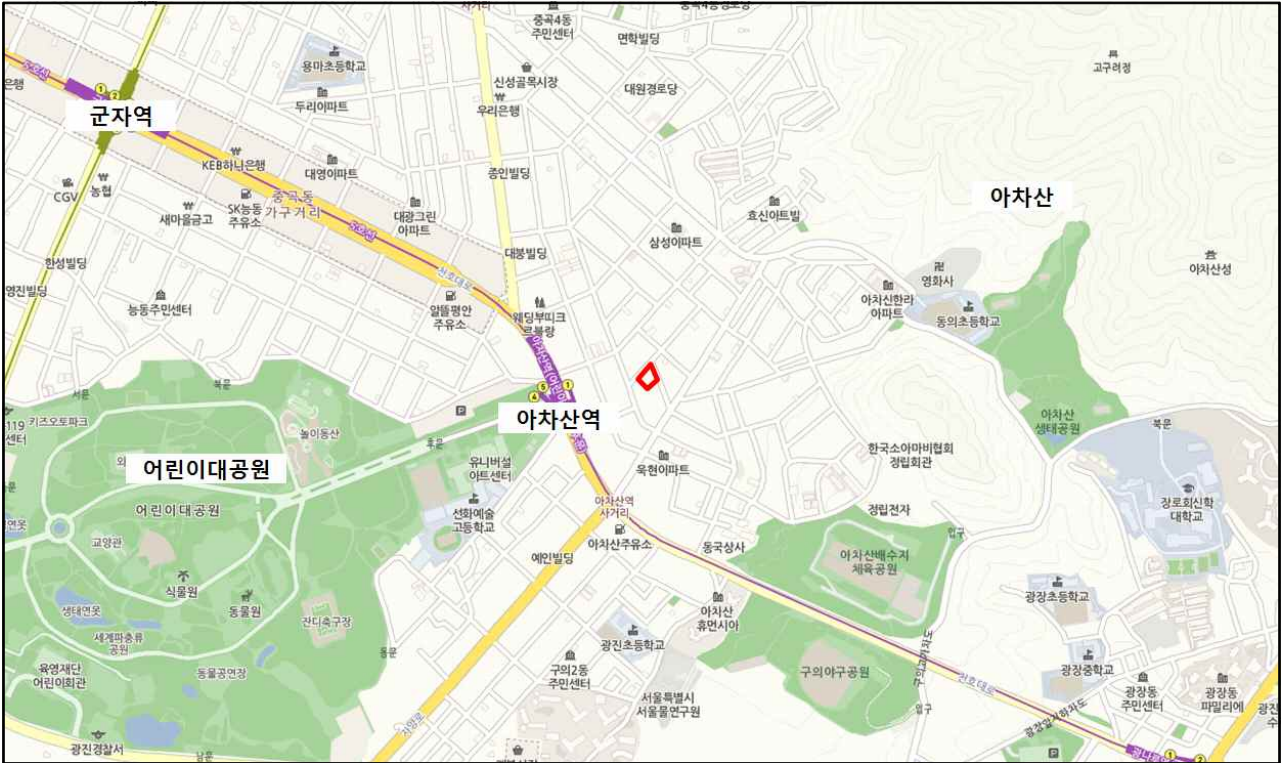
붙 임 :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도면 각 1 부.

※ 작성자 : 도시계획과 지역계획팀 김창욱 (☎ 2133 - 8329)

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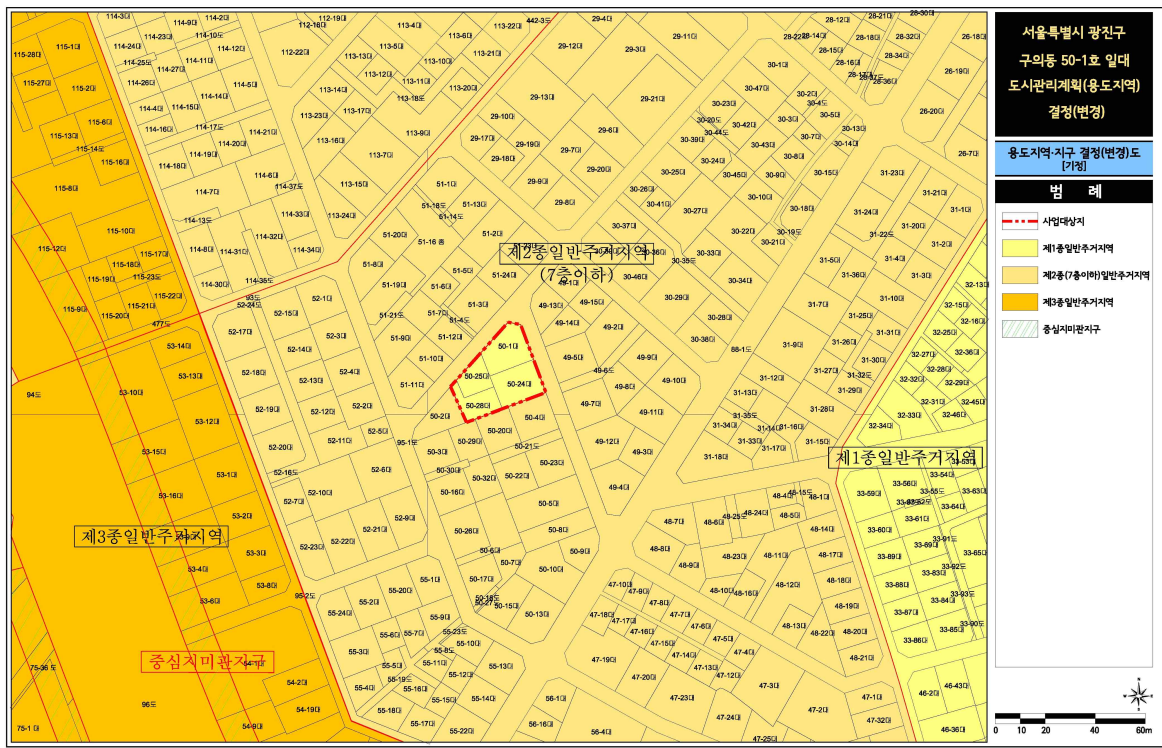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도면

□ 위치도



□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도면

○ 기정



○ 변경

